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14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김해바른·정순용·김형우·
정지광·김안숙 의원
(총5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²⁾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³⁾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2. 주요내용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방법 및 위원의 수)
- 나. 회부안건
-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 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⁴⁾, 제37조⁵⁾, 제40조⁶⁾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결산의 심사)⁷⁾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⁸⁾

4)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9명 이하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6) **제4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7) **제6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8)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위 원 의 수 : 9명 이하

4. 위원의 선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

5. 회 부 안 전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6. 활 동 기 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전 본회의 의결 시까지

7.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질문과 답변 실시
-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명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바른.	
이 지 영	
김 형 우	김형우
정 리 과	정리과
김 안 숙	김안숙